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윤기섭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6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윤기섭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
김경훈, 김성준, 김영옥,
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
김원중, 김재진, 김종길,
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
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
남궁역, 문성호, 박상혁,
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
서상열, 서호연, 소영철,
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
유만희, 유정인, 윤영희,
이경숙, 이민석, 이병윤,
이봉준, 이상욱, 이승복,
이종배, 이종태, 이희원,
임규호, 장태용, 정지웅,
채수지, 최민규, 최유희,
최진혁, 허 훈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52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「교통안전법」의 개정으로 단지내도로 범위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를 포함하면서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됨.
- 이에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(안 제4호제6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안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(1)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(2)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(3)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4)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(5)비용추계 등의 자료 : 비용추계서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시장은 「교통안전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⑤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시장은 「교통안전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의 <u>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.</u>

문서번호

2023101300000014

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윤기섭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김지혜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3.

회신일 : 2023.10.13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(시장의 책무) 제6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(2호)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 -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(시장의 책무) 제6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